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자주 묻는 질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ENV.B국 — 경쟁력 있는 순환경제 및 청정 산업 정책

ENV.B.1과 — 바이오경제 및 지속가능 소재

문의: B.1과

이메일: ENV-B01-ARES@ec.europa.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B-1049 Brussels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자주 묻는 질문

목차

I.	대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개요	5
II.	정의	7
III.	우려물질	12
IV.	재활용성	17
V.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	21
VI.	퇴비화 가능성	25
VII.	포장 최소화	26
VIII.	라벨링	29
IX.	환경 강조표시	31
X.	제조자의 의무	32
XI.	빈 공간	34
XII.	금지 및 특정 포장의 사용	35
XIII.	재사용 및 재충전	38
XIV.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44
XV.	포장의 적합성 평가	45
XVI.	폐기물 예방	49
XVII.	확대 생산자 책임제	51
XVIII.	반환 및 수거 시스템	54
XIX.	보증금 반환제	56

약어

CMO: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농산물 시장의 공동조직(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을 수립하는 2013년 12월 1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DfR:	Design for recycling; 재활용 설계 요건
DRS:	Deposit and Return System; 보증금 반환제
DSA: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디지털 서비스 단일시장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2/2065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
EO:	Economic Operator; 경제주체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대 생산자 책임제
EPS:	Expanded Polystyrene; 발포 폴리스티렌
ESPR: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지속가능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781
FCM:	Food-contact material, as regulated under Regulation (EC) No 193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식품접촉물질(Food-contact material)로서,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 및 제품에 관한 2004년 10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935/2004에 따라 규율되는 대상
FIBC: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 유연 중간 벌크 용기
HoReCa:	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숙박·외식·케이터링 업계
IBC: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중간 벌크 용기
JRC:	Joint Research Centre; 공동연구센터
NACE: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 표준산업분류
OJ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관보

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PPWD: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
PPWR: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5/40
PRO:	Producer Responsible Organisation; 생산자 책임기구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REACH) 및 유럽화학물질청 설립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907/2006
SoC:	Substances of Concern; 우려물질
SUPD: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 저감에 관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9/904
TRIS:	Procedure under Directive 2015/1535 to prevent creating barriers in the internal market; 내부시장 내 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지침 2015/1535에 따른 절차
WFD: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
XPS:	Extruded Polystyrene; 압출 폴리스티렌

I. 대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개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5/40¹은 유럽연합 전역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해 조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본 규정의 주요 목적은 내부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포장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데 있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지침 94/62/EC)²을 대체함으로써, 본 규정은 모든 경제주체 및 회원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며 통일된 요건을 도입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포괄적이다. 이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내용물이 없는 경우와 충전된 경우 모두 포함)에 적용되며, 사용된 재질, EU 역내 생산 여부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EU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폐기물에도 적용된다. 포장은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인도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품(그 구성요소 포함)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다만, 제품의 일부로서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제품과 함께 폐기되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EU) 2025/40은 포장 관련 국가별 조치를 조화시키고, 시장 분절을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 가능성 및 재사용 목표, 유해물질 제한, 친환경 설계 및 라벨링 요건 등을 포함한 의무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다수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일반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예: 재활용성 요건, 재활용 함량 목표, 특정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는 2030년부터 적용), 세부 시행 일정은 별도로 규정된다.

PPWR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예방 목표(Waste Prevention Targets):** 2018년 대비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 (제43조)
- **재활용성(Recyclability):**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 가능해야 함 (제6조)
- **재사용 목표(Reuse Targets):** 운송, 전자상거래, 음료 포장의 재사용 목표(제29조)
- **제한Restrictions):** 특정 일회용 포장 형식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 (제25조 및 부속서 V), 식품 접촉 포장 내 PFAS는 2026년 8월 12일부터 금지 (제5조 제5항)
- **빈공간 비율 제한(Empty Space Threshold):** 집합·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최대 50%로 제한 (제24조)

¹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5/40으로서,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를 개정하고, 지침 94/62/EC를 폐지하는 규정(OJ L, 2025/40, 22.1.2025).

²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OJ L 365 31.12.1994, p. 10).

- 보증금 반환제(DRS) 의무화: 음료 캔 및 플라스틱 병에 적용 (제50조)
- 라벨링(Labelling): 모든 포장에 대해 조화된 분리배출 라벨 의무화 (제12조 제1항)
-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생산자 의무 강화 (제44조~제47조)

본 문서는 규정 채택 이후 환경총국이 접수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문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에 대한 집행위원회 고시(이하 위원회 지침 문서)를 보완하는 자료이다.

II. 정의

1) 포장의 정의에서 ‘...비어 있거나 제품이 채워진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PPWR상의 포장 및 제조자 정의를 수정하는가?

제3조 제1항 제1호는 포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지침 94/62/EC의 정의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큰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새로운 정의에는 ‘...비어 있거나 제품이 채워진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문구는 포장의 정의 또는 제조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PPWR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실제 상황과 포장 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의 정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차 및 커피 관련 포장 정의에서 point (g)에만 ‘기계 사용(machine use)’이 언급되고 제3조 제1항 point (f)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문구는 필터 커피/티백 시스템과 커피 추출 기계용 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 사용 여부는 차·커피 캡슐이 제3조 제1항 제1호 (f)에 해당하는지 또는 (g)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이며, 투과성(permeability)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구분은 제9조의 퇴비화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투과성(permeable)있는 차·커피 또는 기타 음료용 티백 및 유사 포장(제품과 함께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 1호 (f) 해당)은 의무적으로 퇴비화 가능해야 한다. 반면, 비투과성(non-permeable)이며 기계에서 사용되는 단일용 포장(제품과 함께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 1호 (g) 해당)은 의무적 퇴비화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원국은 바이오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된 경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해당 포장에 대해 자국 내에서 퇴비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금속 캡슐의 경우 회원국은 이를 금지하거나 퇴비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시장에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이라는 표현이 경우에 따라 EU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회원국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에 공급’(제3조 제1항 제9호) 및 ‘시장에 출시’(제3조 제1항 제10호)의 정의는 EU 단일시장(Union market)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경제주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화된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폐기물 감축, 재활용 목표, 분리수거,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은 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제3조 제1항 제11호). 이 정의는 ‘시장에 공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적용 범위를 EU 전체가 아닌 특정 회원국 영토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생산자는 포장된 제품이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제공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시장에 공급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제품은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 사용자**(소비자 또는 전문 사용자)는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지만, **공급받은 형태 그대로 해당 제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수령자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제품의 실제 사용 방식**이다. 전문 사용자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자체 운영 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고 동일한 형태로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로 간주된다.

포장 제품의 생산자는 포장의 특성 및 유통·판매 구조를 고려하여, 수령자가 최종 사용자(소비자 또는 전문 사용자)인지 또는 다른 회원국에서 재판매할 상업적 구매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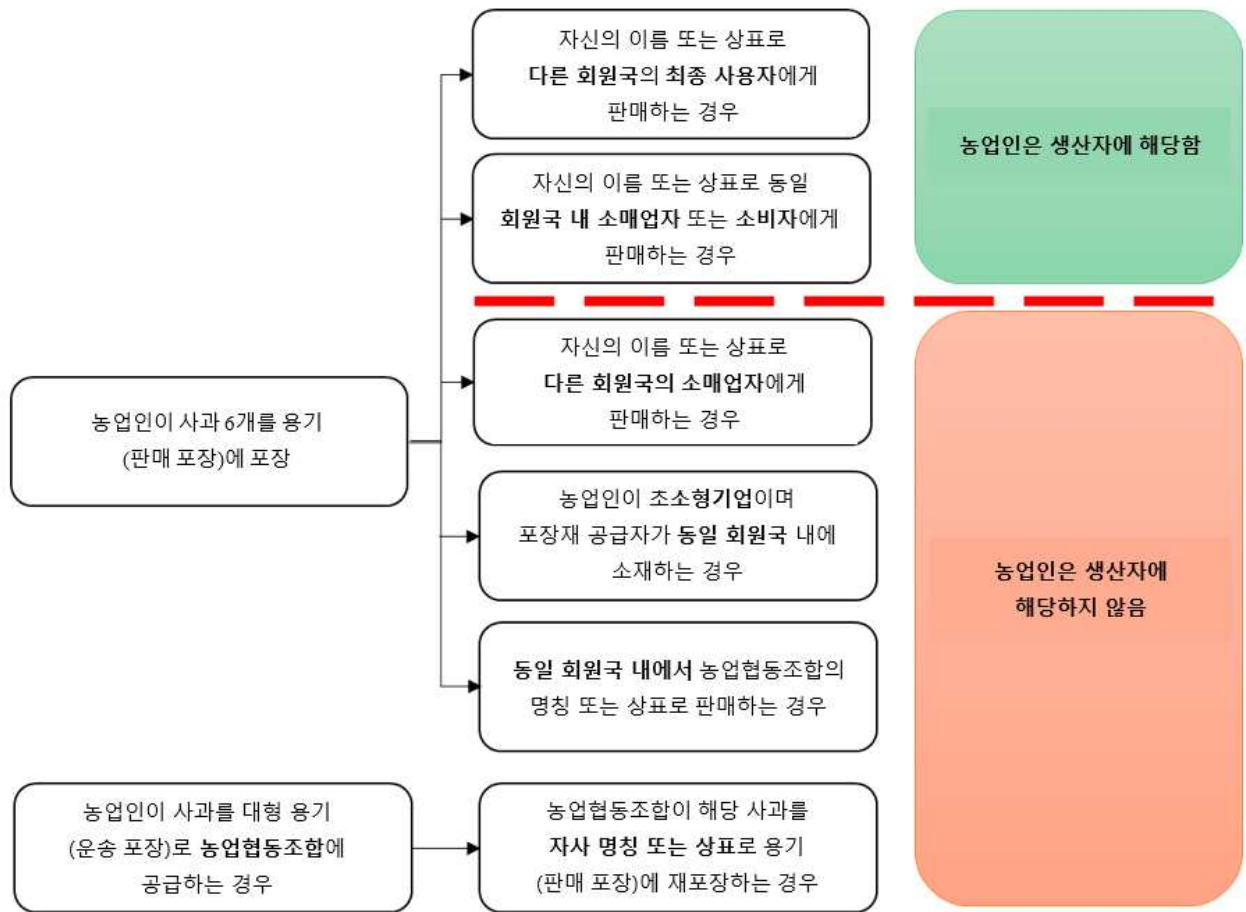
한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취급하며 포장 해제, 재포장, 분할 등의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물류업체는 최종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농업인은 EPR 의무상 ‘생산자’에 해당하는가?

농업인이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확대 생산자 책임제와 관련하여 특정 산업(예: 농업)에 대한 일반적 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원국 영토 내에서 최초로 포장을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농업인이 일반적으로 생산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다.

- 농업인이 사과를 용기(판매 포장)에 포장하여 동일 회원국 내에서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농업인은 생산자에 해당한다.
- 농업인이 포장된 사과를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수령자가 최종 사용자일 때에만 생산자에 해당하며, 다른 회원국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소기업(micro-enterprise)에 해당하고, 사과 용기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농업인과 동일 회원국 내에서 생산자로 간주된다.
- 해당 용기가 농업인이 속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 또는 상표로 생산되는 경우 개별 농업인이 아니라 해당 협동조합이 생산자에 해당한다.
- 농업인이 사과를 대형 용기(운송 포장)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협동조합이 이를 자사 명칭 또는 상표로 용기에 재포장(판매 포장)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생산자에 해당한다.



생산자 정의는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 단계에서 사용되는 포장도 포함한다. ‘1차 생산’이란 “수확, 착유 및 도축 이전의 사육 동물 생산을 포함하여, 1차 산물을 생산·사육·재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3). 예를 들어 건조 베일(hay bale)에 사용되는 포장재(포일, 결속 스트랩 등)는 동일 농장 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베일이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에 비로소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포장으로 인정된다.

6) 포장이 언제 ‘복합소재 포장(composite packaging)’으로 간주되는가?

주요 포장 재질 이외의 재질 총량이 해당 포장 단위 전체 질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각 개별 재질의 질량이 5% 미만이라도, 해당 포장은 복합소재 포장에 해당한다 (제3조 제1항 제24호).

복합소재 포장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다층 유연 포장이 있다. 이 포장은 구조적 강도 및 인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재질로 폴리프로필렌(PP)(83~90%)을 사용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소 및 빛을 차단하는 알루미늄 포일 또는 금속화 PET(3~4%)의 차단층을 포함한다. 또한 기밀 밀봉을 위한 열접착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3~4%)로 구성된 추가 차단층이 사용될 수 있다. 브랜드 표시 및 적층 결합을 위한 인쇄 잉크와 접착제도 사용되며, 이는 전체 질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다만, 이러한 인쇄 잉크와 접착제는 복합소재 포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포장은 중량 기준으로 하나의 주요 포장 재질과 그 외 재질들이 합산하여 전체 질량의 5%를 초과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모든 포장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제3조 제1항 제24호의 의미에 따른 복합소재 포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재질’은 동일 고분자 계열 내의 변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질 범주 또는 기능층(예: 차단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계열(LDPE, LLDPE 또는 HDPE)은 일반적으로 동일 재질로 간주되는 반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층, 알루미늄 포일 또는 금속화 소재의 결합은 서로 다른 재질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이 해석은 부속서 II 표 1에 규정된 포장 형식 분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 표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제3조에서 규정된 복합소재 포장의 법적 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제7조 제8항에 따른 시행법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구성요소가 수작업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소재 포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복합소재 포장의 정의는 지침 (EU) 2019/904(4)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하며 식품 안전 관련 절차를 규정한 2002년 1월 2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제3조 제17호(OJ L 031 1.2.2002)

(4)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04(SUPD).

7) 음료병용 크라운 코르크(crown cork)는 일체형 구성요소인가, 아니면 별도 구성요소인가?
유리병용 크라운 코르크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4호에 따라 별도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마개는 병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된 포장 단위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포장 단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가 요구된다. 향후 재활용 설계 요건(DfR)에 관한 위임법에서는 일체형 구성요소와 별도 구성요소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8) 지침 2008/68/EC⁽⁵⁾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은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에 적용되는가? 또한 비위험물 운송에도 적용되는가?
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및 재사용 목표에 관한 규정에는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에 대해 특정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포장이 지침 2008/68/EC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비록 UN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예: 제한수량(LQ) 표시 하에 사용되는 포장), PPWR에 따른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비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UN 인증 포장의 경우에는 PPWR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5) 위험물의 내륙 운송에 관한 2008년 9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68/EC(OJ L 260, 30.9.2008, pp. 13-59).

III. 우려물질

- 1) 우려물질(SoC)의 정의가 ESPR을 참조하고 있는 경우, ESPR 제2조 제27호 point (a), (b), (c), (d)에 규정된 조건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한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의 정의와 관련하여 ESPR 제2조 제27호 point (a)부터 point (d)까지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해당 물질은 SoC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6).

또한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포장의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oC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2) 물질(substances)과 우려물질(SoC)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한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PPWR은 우려물질(SoC)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가?

우려물질(SoC)의 정의는 ESPR을 참조하고 있으며(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문단), 이에 따라 PPWR과 ESPR 모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ESPR은 우려물질 식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해당 물질의 유해 특성과 CLP 규정(7)에 따른 분류에 기반한다. 또한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8). 이러한 조건은 누적적 요건이 아니며, 그 중 하나만 충족되면 해당 물질은 SoC로 간주된다.

(6) ESPR FAQ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 Circabc.

(7)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72/2008으로서, 지침 67/548/EEC 및 1999/45/EC를 개정·폐지하고 규정 (EC) No 1907/2006을 개정하는 규정(OJ L 353, 31/12/2008, p. 1-1355).

(8) ESPR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우려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가) 규정 (EC) No 1907/2006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규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식별된 물질;

나) 규정 (EC) No 1272/2008 부속서 VI 제3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해성 등급 또는 범주로 분류된 물질

a. 발암성 1군 및 2군

b.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 1군 및 2군

c. 생식독성 1군 및 2군

d.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1군 및 2군

e.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1군 및 2군

f. 잔류성·이동성·독성 또는 매우 높은 잔류성·이동성 특성

g.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또는 매우 높은 잔류성·생물축적성 특성

h. 호흡기 감작성 1군

i. 피부 감작성 1군

j.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1~4군

k. 오존층 유해성

l. 특정 표적 장기 독성(반복 노출) 1군 및 2군

m.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회 노출) 1군 및 2군

다) 규정 (EU) 2019/1021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

라)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

3) PPWR은 우려물질(SoC)의 추가 및 재활용 원료(recyclates)의 사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 규정의 목적은 포장 내 SoC 존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재활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될 재활용 설계 요건(DfR)을 통해 해당 물질을 제한하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서는 REACH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 물질의 식별은 현재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수행 중인 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4)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에 해당할 수 있는 물질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포장에 포함될 수 있는 우려물질(SoC)의 수에 대해 확정된 수치나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수행 중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포장 제조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SoC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려물질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규정 (EU) 2024/1781(ESPR) 제2조 제27호에 규정된 각 기준별로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관리하는 ‘허가 대상 고위험물질 후보목록(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⁹⁾이나,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 (EC) No 1272/2008 부속서 VI⁽¹⁰⁾ 등이 SoC 식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포장 공급자는 우려물질(SoC)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

포장 공급자의 의무는 PPWR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포장 및 포장 재료가 본 규정을 준수함을 제조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조자는 포장 재료 공급자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포장 내 PFAS 또는 기타 우려물질(SoC)의 존재 여부를 식별하고, PPWR 제5조 준수를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우려물질(SoC)의 농도 기준은 어느 수준에서 설정되는가?

본 규정은 재질 및 배출에서 우려물질(SoC) 함량을 최소화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이며, 허용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본 규정은 SoC에 대해 일반적인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질(예: PFAS 및 일부 중금속)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농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수행 중인 연구를 통해 SoC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지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자는 기존의 SoC 정의에 근거하여 이미

⁽⁹⁾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¹⁰⁾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72/2008 으로서, 지침 67/548/EEC 및 1999/45/EC를 개정·폐지하고 규정 (EC) No 1907/2006을 개정하는 규정(OJ L 353, 31.12.2008, pp. 1-1355).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식별할 수 있다. SoC 기준은 주로 유해 특성에 기반하나, 개별 사례별로 재활용 및 재사용과 관련된 요소도 포함된다.

향후 2033년까지 집행위원회가 수행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장 내 SoC의 존재 및 농도 최소화에 대한 규정의 효과성이 검토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농도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의 존재를 제한하기 위한 위임법을 채택할 수 있다.

7) PPWR 제5조 제1항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본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우려물질(SoC) 함량 최소화 의무도 동일 시점부터 적용된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에서도 포장 또는 포장 폐기물 잔재가 소각되거나 매립될 때 발생하는 배출물, 재 또는 침출수 내 우려물질의 존재를 최소화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4가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농도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8) 우려물질(SoC) 관련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화표준 EN 13428:2004는 여전히 적용 가능한가?

우려물질(SoC) 관련 요건은 PPWR에서 강화되었다. PPWR에 따라 포장은 재질 자체뿐만 아니라 배출물 또는 폐기 결과물 내에서도 ‘*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가 최소화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최종 처리 단계뿐만 아니라 재사용, 재활용 및 화학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도 명시적으로 연계된다. 반면, EN 13428:2004는 주로 배출 및 폐기 단계에서의 위험물질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PPWR 제5조에서 요구하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해당 표준은 REACH에 따른 고위험우려물질(SVHC), CLP 유해성 분류, 재활용성 영향 등 PPWR에서 확대된 유해성 범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조화표준 EN 13428:2004⁽¹¹⁾의 부속서 C(‘*위험물질 또는 혼합물의 최소화 및 적합성 입증*’ 관련)는 2026년 8월 1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합성 추정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준비 중인 포장 내 우려물질 존재에 관한 보고서는 포장 제조자가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그 존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9) 포장 내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는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되는가?

본 의무는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제10호).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초소형기업인 경우에는 공급자가 해당 규정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11)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 통신문(2005년 2월 19일 OJ C 44)를 통해 공표된 조화표준, EN 13428:2004 포장 - 제조 및 구성 관련 요구사항 - 원천 감축(Source reduction)을 통한 포장 폐기물 예방.

10) 식품 접촉 민감 포장인 경우에도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우려물질 최소화 의무와 제5조 제4항의 4가지 중금속에 대한 제한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 다만 제5조 제5항에서 규정된 PFAS 관련 제한은 식품접촉물질에 한하여 적용된다.

11)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려물질(SoC)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회원국이 새로운 우려물질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접근 가능한가?

PPWR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려물질(SoC)에 관한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우려물질(SoC)에 대한 모니터링은 집행위원회의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12)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¹²⁾에 따라 유리 포장에 대해 도입된 중금속 농도 기준 관련 예외는 계속 적용되는가?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는 PPWR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으며 계속 적용된다. 이는 재활용 유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총합 농도가 중량 기준 100ppm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제조 공정에서 납, 카드뮴, 수은 또는 6가 크롬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서 설정된 농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위임법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이는 허용되는 총 농도 기준을 낮추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PPWR에 규정된 중금속 제한의 적용 시점을 연장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13)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규정 (EC) No 1935/2004,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규정 (EU) 10/2011⁽¹³⁾,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 (EU) 2019/1021 및 REACH 규정은 PPWR의 PFAS 제한과 연계하여 개정될 예정인가?

PPWR은 PFAS에 대한 전면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농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PPWR의 PFAS 기준이 다른 개별(수직적) EU 법령으로 자동적으로 반영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 제5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식품접촉물질 규정, REACH 규정 또는 POPs 규정에서의 PFAS 사용 제한 또는 금지와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PPWR의 PFAS 제한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14) 제5조 제5항의 PFAS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에도 적용되는가?

(12)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에서 규정된 중금속 농도 기준과 관련하여 유리 포장에 대한 예외 적용 조건을 설정한 2001년 2월 19일 집행위원회 결정(OJ L 62, 2.3.2001, pp. 20-21).

(13)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2011년 1월 14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0/2011(OJ L 012 15.1.2011)

PPWR에 따른 PFAS 제한은 의도적 첨가 여부와 비의도적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일부 선정된 포장에 대한 PFAS 실험실 분석 결과⁽¹⁴⁾에 따르면, 실제로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에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해당 기준은 제조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 단위 전체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관련 잉크, 해당 제한은 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재질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잉크, 바니시, 접착제 등 관련 물질에도 적용되는가?

해당 농도 기준은 제조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 단위 전체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관련 잉크, 바니시, 접착제 및 접합제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제조자는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문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문서 참조).

16) PFAS 제한 대상 물질 목록(CAS 번호 포함)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인가?

본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 PFAS 물질 목록은 별도로 공표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PPWR에서 정의된 PFAS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및 포장 내에 존재하거나 오염된 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 PFAS에 적용된다.

17) EU 차원에서 식품 접촉 포장 내 PFAS에 대한 조화된 시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PFAS 기준은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는 PFAS 기준 집행을 위해 회원국 시장감시기관 간 조화된 접근 방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업계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및 회원국의 관찰 당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식품 접촉 포장 내 PFAS에 대한 조화된 시험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작업에는 식품접촉물질 관련 유럽참조실험실(EURL on Food Contact Materials)과의 협력도 포함되며, 해당 기관은 식품접촉물질 분야 국가 참조실험실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8) PFAS 기준 집행의 출발점이 총 불소 분석(total fluorine analysis)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험 방법을 제공하는 실험실은 어디인가?

이미 총 불소(total fluorine) 또는 총 유기 불소(total organic fluorine) 분석을 제공하는 상업적 및 대학 연구소가 다수 존재한다. PPWR의 PFAS 기준 도입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상업 및 공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 역량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관련 분석을 수행하던 기관 또한 시험 역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¹⁴⁾ Skedung L.1 및 Bjarnemark F.: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과 향후 보편적 제한에 따른 PFAS 적합성 시험을 위한 조화된 워크플로우: 식품 접촉 포장 사례 연구. 1 스웨덴 RISE 연구소(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IV. 재활용성

1) 재활용 성능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 포장 단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 일체형 구성요소와 별도 구성요소의 차이는 무엇인가?
- 포장 단위의 주요 본체는 무엇인가?

‘포장 단위(unit of packaging)’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의되며, 포장 기능(예: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인도, 저장, 운송 또는 진열)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일체형 구성요소 또는 별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장 단위는 판매 시점 이전에 폐기되는 집합 포장 또는 운송 포장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단위다. ‘포장 단위’라는 용어는 PPWR에서 사용되는 ‘포장 단위(packaging unit)’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형 구성요소와 별도 구성요소는 각각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43호 및 제44호에서 정의되어 있다.

포장 단위의 예로는 소비자에게 판매 시점에 제공되는 플라스틱 케첩 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케첩 병은 플라스틱 병 본체, 탈착 가능한 뚜껑(예: 소비자가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하는 박리형 포일), 라벨 및 마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케첩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뚜껑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 이는 별도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마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케첩 병과 함께 폐기되므로 일체형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라벨 역시 통상적으로 플라스틱 병에 부착되어 함께 폐기되므로 일체형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우, 플라스틱 병 자체가 포장 단위의 주된 본체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장 단위의 주된 본체는 일반적으로 중량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만 유연 포장의 경우 마개는 예외로 고려된다.

제6조 제9항에 따르면, *포장 단위에 일체형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재활용 설계 요건(DfR) 및 대규모 재활용 실현 단계(recycled-at-scale)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모든 일체형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운송 또는 선별 과정에서 기계적 하중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일체형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특정 포장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 시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 또는 구성요소는 제6조에 따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재활용성 의무에 대한 예외는 제6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예외를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회원국 관할 당국에 의해 제기된 혁신적 포장과 관련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요청을 평가하고 제6조 제4항에 따른 위임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채택해야 한다. 혁신적 포장이란 “*새로운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포장으로서,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또는 인도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입증 가능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포장”을 의미하며, 단순히 제품의 외관 개선 또는 마케팅 목적을 위한 기존 포장의 변경은 제외된다(제3조 제1항 제46호).

집행위원회는 제6조 제11항에 따른 예외 및 제6조 제10항에 따른 혁신적 포장 관련 예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본 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포장 또는 그 구성요소가 제6조 제11항에 따른 기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혁신적 포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조자는 2030년부터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에서 DfR 요건을 명시하는 해당 위임법의 발효 시점 이후 2년 또는 2030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는 DfR 지침에 부합하도록 포장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체형 구성요소는 포장 단위의 재활용성 등급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체 포장 단위를 부적합으로 만들 수 있다.

3) 예외 적용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완료까지 예상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집행위원회는 혁신성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해당 절차는 제6조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법령을 통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혁신성 판단 기준은 제3조 제1항 제4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성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4) 회원국은 자체적인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제6조 제4항 point (d)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제45조 제1항에 따른 EPR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기여금의 조정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포장의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기반하여 설정된다.

이와 같은 조화된 체계는 EU 내부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규제 분절화를 방지하고, 특히 여러 회원국에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주체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용성 성능에 기반한 국가별 상이한 에코모듈레이션 체계는 내부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을 초래하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해당 조화된 체계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대신 재활용성 평가를 통해 산정된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기반하여 EPR 수수료를 조정하는 기준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조화된 에코모듈레이션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회원국은 PPWD에 따라 채택된 자국 규정에 근거하여 포장의 재활용성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내부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에코모듈레이션 조치가 기술규정 또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TRIS

통지 시스템을 통해 지침 (EU) 2015/1535⁽¹⁵⁾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재활용 설계 요건(DfR)에 관한 위임법이 발효되어 포장의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기반한 EPR 수수료 에코모듈레이션에 대한 조화된 체계가 마련되면, 회원국은 해당 조화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EU 전역에서 에코모듈레이션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회원국은 재활용 원료 함량, 우려물질의 존재, 또는 포장의 재사용성 등 다른 기준에 기반하여 생산자의 재정적 기여금을 계속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이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을 기준으로 에코모듈레이션을 도입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2026년 말까지 제7조 제9항에 따라 마련할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환경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5) 회원국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재활용 ‘실현 단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실현 단계’ 평가는 부속서 II 표 2에 규정된 포장 범주별로 EU 전체 수준에서 달성해야 하는 재활용 목표 55%⁽¹⁶⁾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포장 범주 목록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실현 단계’ 평가는 개별 회원국의 재활용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특정 회원국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EU 전체 수준에서의 재활용률 향상 및 2차 원료의 확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수거, 선별 및 재활용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규정은 보증금 반환제(DRS) 도입 의무, 조화된 분리배출 라벨 의무화, 회원국의 의무적 수거 목표 설정,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매립 또는 소각 금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의 이행은 EU 전반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경제주체가 재활용 ‘실현 단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6) 제6조 제11항 (e)에 따른 이유식 관련 예외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규정 (EU) No 609/2013⁽¹⁷⁾에 언급된 이유식에 대한 예외는 해당 규정 제2조 제2항 (f)의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예외는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과일 주스, 푸레 또는 기타 제품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7) 재활용 ‘실현 단계’ 평가는 발생원, 산업 분야 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포장 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는가?

(15)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확보 조치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2/2555로서, 규정 (EU) No 910/2014 및 지침 (EU) 2018/1972를 개정하고 지침 (EU) 2016/1148을 폐지하는 지침(OJ L 333 27.12.2022)

(16) 목재 포장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질에 대해 적용되며, 목재 포장의 경우 30%가 적용됨.

(17) 영유아용 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및 체중조절용 완전식에 관한 2013년 6월 1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609/2013으로서, 이사회 지침 92/52/EEC, 집행위원회 지침 96/8/EC, 1999/21/EC, 2006/125/EC 및 2006/141/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9/EC, 그리고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41/2009 및 (EC) No 953/2009를 폐지하는 규정 (OJ L 181, 29.6.2013, pp. 35-56)

재활용 ‘실현 단계’ 평가는 모든 포장 재질에 대해 55%, 목재의 경우 30%의 재활용 목표와 연계되며, 이는 발생원(가정, 상업, 산업 폐기물), 산업 분야 또는 유형과 관계없이 EU 내에서 발생하고 재활용된 모든 포장 폐기물을 포함한다. 재활용률 산정은 개정된 집행위원회 결정 2005/270에 규정된 기존 계산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PPWR 제56조 제7항에 따라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8) 제6조는 PPWR 제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이 발효되기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 판매 포장 및 운송 포장에도 적용되는가?

서문(Recital) 제14항은 ‘포장은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지속가능성 요건 및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강조 추가). 다만, 관련 요건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고로 보유 중인 포장 포함)은 본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에서 회수될 필요도 없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해당 위임법에서 규정된 Dir에 따라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 의무는 포장의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재사용 포장 또는 일회용 포장, 판매 포장, 집합 포장 또는 운송 포장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제6조 제4항에 따른 위임법이 2028년 1월 1일까지 채택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제조자가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한 재사용 포장 또는 운송 포장은 재활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에 출시(placing on the market)’는 포장 설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9) 코르크, 경량 목재, 섬유, 세라믹, 고무, 도자기 및 왁스로 제조된 포장에 대한 재활용성 요건의 예외는 2035년까지 유효한가?

제6조 제1항은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1항은 특정 포장 재질 및 부문에 대해 이 요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3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예외의 유지 여부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코르크, 경량 목재, 섬유, 세라믹, 고무, 도자기 및 왁스로 제조된 포장에 대한 예외는 판매 포장에만 적용되며, 이는 해당 포장이 시장 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활용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재활용성 성능에 따라 확대 EPR 수수료를 조정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판매 포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포장에 대한 재활용성 평가는 시장 출시 여부 판단이 아니라 EPR 수수료 조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V.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

1)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의 준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PPWR에서 규정한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의 준수 여부는 부속서 VII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포장의 기술문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 준수는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한 경제주체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제조된 플라스틱 트레이와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조된 박리형 뚜껑을 결합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PET 트레이와 PP 뚜껑은 EU 내 서로 다른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어 해당 경제주체에게 공급되며, 경제주체는 이 포장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트레이에 뚜껑을 씌우고 제품을 충전한 후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트레이와 뚜껑을 각각 제조하는 두 제조 공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 구성요소의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주체(즉, 제조자)는 재활용 원료 함량에 관한 법적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원칙은 중간 플라스틱 포장 구성요소, 빈 플라스틱 포장 또는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로 EU에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에도 적용된다. 또한 경제주체는 재활용 원료 함량이 제7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향후 시행법에서 규정될 지속가능성 기준 및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과 관련하여 ‘제조 공장 및 연도별 평균(average per manufacturing plant and yea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조 공장은 포장이 생산되는 산업 시설을 의미한다. 연도별 평균은 특정 제조 공장에서 특정 제조자를 위해 생산된 각 플라스틱 포장 유형 및 형식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한 회계연도(달력 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을 의미한다. 해당 제조 공장은 특정 제조자에게 공급된 연간 평균이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 공장에서 여러 포장 형식이 생산되므로, 제조자는 각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를 산정해야 한다.

재활용 원료 함량의 계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규칙은 제7조 제8항에 따라 채택될 시행법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3) 접착제, 도료 및 잉크는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접착제, 도료 및 잉크는 PPWR상 플라스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해당 물질이 포장 단위 전체의 5% 미만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에 관한 환경 강조표시는 허용되는가?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원료 함량이 PPWR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 강조표시가 허용된다.

제14조는 경제주체가 포장 단위, 재활용 원료가 포함된 포장 단위의 일부, 또는 해당 경제주체가 한 달력 연도 동안 시장에 출시한 모든 포장에 대해 환경 강조표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 표에서 예시로 제시된다.

예시	PPWR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	환경 강조표시 대상	허용되는 환경 강조표시
PP 재질의 마개 시스템이 포함된 PET 플라스틱 병	PET 병: 30% PP 마개: 10%	포장 단위 (병 및 마개 시스템)	PET 병의 재활용 원료 함량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PP 마개 시스템의 재활용 원료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 강조표시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 준수 여부는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5) 경제주체는 어떤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은 판매 포장, 집합 포장 및 운송 포장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된다. 우선, 경제주체는 해당 포장이 식품 접촉 민감 포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포장이 어떤 고분자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는 적용해야 할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 논리는 아래 표에서 예시로 제시된다.

	포장 형식	1단계: 포장이 접촉 민감한가?	2단계: 사용된 고분자는 무엇인가?	2030년 적용 목표
예시 A	제품 운송용 팔레트 래핑 필름	비접촉 민감	PET 이외	제7조 제1항 point (d), 35%

예시 B	음료용 카톤	접촉 민감	PET 이외	제7조 제1항 point (b), 10%
예시 C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접촉 민감	PET	제7조 제1항 point (c), 30%

6)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은 2030년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에도 적용되는가?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 제8항에 따른 시행법 발효 후 3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에만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적용 시점 이전에 제조자에게 공급되었으나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7) 유리병에 부착된 플라스틱 마개 및 라벨도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제7조 제5항 point (b)은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이 예외는 플라스틱 구성요소에 한정되며, 비플라스틱 재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속 마개와 라벨이 부착된 유리병의 경우, 금속 마개는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플라스틱 라벨은 해당 라벨의 중량이 포장 단위(병)의 전체 중량 대비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8) 우유 포장에는 플라스틱 마개에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영유아용 분유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마개를 두 제품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경제주체는 우유 포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가?

2030년부터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플라스틱 구성요소가 제7조 제1항의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유는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의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자는 우유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마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즉석 영유아용 분유 포장의 플라스틱 마개는 제7조 제4항 (g)에 따른 예외에 따라 재활용 원료 함량을 포함할 의무가 없다.

9) 제7조의 예외에서 사용되는 ‘접촉 민감 플라스틱 포장(contact-sensitive plastic packaging)’과 ‘직접 접촉 포장(immediate packaging)’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직접 접촉 포장(immediate packaging)’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의미하는 반면⁽¹⁸⁾, PPWR 제3조 제1항 제49호에 따르면 접촉 민감 포장은 식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18)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공동체 법전을 규정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3/EC 제1조 제23호 (OJ L 311 28.11.2001, p. 67)

포장을 의미한다.

의료기기 및 기타 의약품의 맥락에서 ‘직접 접촉 포장’은 일반적으로 PPWR 제3조 제1항 제49호에 따른 ‘접촉 민감 플라스틱 포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개념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PPWR 제7조의 이행 목적상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10) PPWR 및 SUPD에 따른 재활용 원료 함량 관련 보고 의무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설명할 수 있는가?

SUPD 제6조 제5항 point (a) 및 point (b)(즉, SUPD 부속서 F에 열거된 음료병에 대한 재활용 원료 함량 목표)와 제13조 제1항 (e)에 따른 회원국 보고 의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 제8항에 따른 재활용 원료 함량 계산에 관한 시행법 발효 후 3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계속 적용된다.

PPWR과 SUPD 간에는 적용 범위에 있어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 SUPD에서는 목표가 회원국 단위로 설정되는 반면, PPWR에서는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요건이 설정되며, 이는 제조 공장 및 연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SUPD에는 복합 재질에 대한 최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PPWR에서는 포장 단위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 또한 SUPD에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11) 수입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

규정 (EU) 2022/1616 및 그 규정(특히 제6조)은 식품접촉물질로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재활용 플라스틱(수입 포장 포함)에 적용된다.

따라서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플라스틱 재료를 식품접촉물질(식품 접촉 포장 포함)로 사용하려는 수입자는 해당 재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료는 식품 접촉 용도로 시장에 출시될 수 없으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있다. 해당 규정 제6조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별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체계의 구축
- 선별부터 재활용까지의 전처리 활동 전반에 대해 제3자 인증을 받은 증명서
- 재활용 원료가 규정 (EU) No 10/2011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VI. 퇴비화 가능성

1) 제9조 제1항은 특정 포장 유형에 대해 퇴비화 가능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장 유형은 2028년 2월 12일 이전에도 바이오폐기물 처리 체계에서 허용되는가?

본 규정은 사용 후 내용물이 남아 있는 차 및 커피용 포장을 포함하도록 포장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신규 포장 품목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으로 분류된다.

제9조의 퇴비화 가능성 요건은 2028년 2월 12일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 이전에는 회원국이 이러한 포장을 바이오폐기물 처리 체계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회원국은 이를 수용하도록 권장된다.

2) 모든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EN 13432:2000을 준수하여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 제조자는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한 모든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조화표준 EN 13432:2000에 따라 인증된 퇴비화 가능 포장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가?

본 규정은 퇴비화 시설이 해당 조화표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행위원회는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9조 제2항은 회원국이 의무적 퇴비화 대상 포장 목록에 추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퇴비화 가능 포장이 바이오폐기물 처리 체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거 체계 및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산업용 퇴비화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향후 개정될 산업용 퇴비화 표준의 개발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3) 현재 퇴비화 가능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경우, 본 규정이 발효 및 적용된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는가?

답변은 ‘그렇다’이다. 특정 포장 형식이 퇴비화 가능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요구가 해당 경제주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국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제8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2026년 8월 12일까지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point (a)에 열거된 항목 외의 추가적인 포장 형식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서 퇴비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VII. 포장 최소화

1) 포장 최소화에 관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가?

그렇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9년 말까지는 PPWD에 따른 필수 요건이 계속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존 표준인 EN 13428:2004도 계속 적용된다. 이는 본 규정 제70조 제1항 point (b)에 따른 것이다.

2) 제10조 제2항에서의 ‘제품의 인지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increase the perceived volume of the product)’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중 벽 구조 또는 이중 바닥과 같은 특정 포장 설계 요소를 사용하여 제품의 인지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	포장 최소화	제품의 인지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안면 크림용 50 ml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를 설계	이중 벽 구조 또는 이중 바닥을 사용하여 실제 내용물이 50 ml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용기 외부에 종이상자를 추가하여 실제 내용물이 50 ml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또한 PPWR 입법 제안을 뒷받침한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제품의 인지된 용량 증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¹⁹⁾.

전반적으로 경제주체는 이중 벽, 이중 바닥, 전면 플랩 및 추가 층 구조가 포장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요소가 포장에 정당한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가장 일반적인 포장 유형 및 형식 이외의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최소화 요건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집행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유럽 표준화 기구에 대해 포장 최소화 요건 준수 여부의

(19)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의 필수 요건 강화 및 포장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기타 조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유럽연합 간행물청, 26쪽: 동일한 크기, 중량 및 부피의 포장 형식이 동일한 종류의 나사를 서로 다른 수량으로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 사례에서는 100개의 나사가 포장에 적합하게 들어가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크기의 나사 20개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례(즉, 20개 포장)는 포장의 부피 및 중량 측면에서 모두 과대포장으로 간주된다.

계산 및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규정하는 조화표준의 마련 또는 필요 시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표준은 본 규정 부속서 IV에 규정된 변경된 성능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표준 EN 13428:2004를 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모든 포장에 대해 포장 최소화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다. 이 표준이 채택되면 경제주체는 개정된 표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장 최소화 요건에 대한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포장 유형 및 형식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유럽 표준화 기구에 대해 적정 최대 중량 및 부피 기준과, 필요 시 벽 두께 및 최대 빈 공간 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4) 제10조 제3항에서 언급된 ‘가장 일반적인 포장 유형 및 형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행위원회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향후 표준화 요청을 통해 ‘가장 일반적인 포장 유형 및 형식’을 식별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형 및 형식은 산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식별되며, 시장에 공급된 수량 등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포장의 기능, 재질 및 형태뿐만 아니라 포장된 제품의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분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표준화 요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포장 최소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5) 어떤 포장이 포장 최소화 요건의 적용에서 제외되는가?

다음의 포장은 포장 최소화 요건(제1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U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포장 제품 또는 음료(예: 와인에 관한 규정 (EU) No 1308/2013, 증류주에 관한 규정 (EU) 2019/787, 공예 및 산업 제품에 관한 규정 (EU) 2023/2411) 또는 규정 (EU) 2024/1143에 따른 품질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 설계가 이사회 규정 (EC) No 6/2002⁽⁶⁴⁾에 따른 공동체 디자인권 또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1/EC⁽⁶⁵⁾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권(회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정에 따른 권리 포함)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이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포장 설계가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포장 최소화 요건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설계의 신규성 또는 개별성이 훼손되는 경우에 한한다.

포장 형상이 규정 (EU) 2017/1001⁽⁶⁶⁾ 또는 지침 (EU) 2015/2436⁽⁶⁷⁾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상표(회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포장 최소화 요건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상표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구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경제주체가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순히 라이선스 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 요건의 존재 및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6) 포장의 ‘형상(shape)’은 포장 최소화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경제주체는 해당 포장이 제10조 제2항 point (a)에 따른 예외(상표로 보호되는 형상 관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조항에서 정한 포장 최소화 요건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는 경제주체가 입증해야 한다.

해당 포장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제주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예정인 포장 최소화 평가 방법론에 관한 개정된 조화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된 조화표준은 평가 방법론에 포장 형상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설계, 어린이 보호 기능(child-resistant), 개봉 여부 확인 기능(anti-tamper), 도난 방지 기능(anti-theft), 위조 방지 기능(anti-counterfeit), 위험 표시 또는 제품의 특성상 요구되는 경우 등과 같이, 포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형상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 PPWR의 포장 최소화 요건과 ESPR의 요건 간 관계는 무엇인가?

기본 원칙은 ESPR에 따른 규제는 다른 법적 수단에 의해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요소가 충분히 또는 적절하게 규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SPR 서문(Recital) 제25항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 ESPR은 특정 제품의 포장에 초점을 맞춘 제품별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PPWR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ESPR은 포장을 하나의 제품군으로서 일반적인 에코디자인 또는 지속가능성 요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건은 PPWR에서 규정된다.

VIII. 라벨링

1)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사용 포장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개별 포장 단위마다 적용되는가?

재사용 포장은 최소 반복 사용 횟수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될 위임법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재사용 운송 포장의 반복 사용 횟수 산정 및 보고 의무는 재사용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open-loop reuse system)의 경우, 해당 의무 및 재사용 포장 라벨과 QR 코드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폐쇄형 재사용 시스템(closed-loop system) 내에서 순환되는 재사용 운송 포장은 재사용 포장 라벨과 함께 QR 코드 또는 기타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별 포장의 추적 및 반복 사용 횟수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해당 포장이 재사용 포장임을 알리는 라벨을 포함한 세부 규정은 제12조 제6항에 따라 채택될 시행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행법에서는 개별 QR 코드 부착 및 반복 사용 횟수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이 경우 평균 추정치를 기반으로 반복 사용 횟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어떠한 경우에 라벨, 마크, 기호 또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마크, 기호, 라벨 또는 문구는 포장의 지속가능성 요건(예: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함량, 재사용성, 퇴비화 가능성, 바이오 기반 함량, 위험물질 함량 또는 폐기물 관리 방식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제8항).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조표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녹색 전환을 위한 권한 강화 지침인 지침 (EU) 2024/825⁽²⁰⁾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해당 강조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포장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포장은 국가별 DRS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가?

PPWR에서는 의무적 보증금 반환제의 적용 대상 포장에 대한 라벨링 요건이 조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회원국의 DRS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국은 제12조 제1항 네 번째 하위문단에 따라 규정된 ‘조화된 색상 라벨(harmonised colour label)’의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이 개인 수입의 형태로, 즉 최종 사용자가 직접 수입하고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으로 간주되지

⁽²⁰⁾ 소비자의 녹색 전환을 위한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하여 지침 2005/29/EC 및 2011/83/EU를 개정하는 2024년 2월 2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4/825(OJ L, 2024/825, 6.3.2024)

않는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사용되는 DRS 라벨의 부착을 금지할 수 없다.

**4) 제12조 제7항 두 번째 하위문단에 따라 라벨링 요건상 식별되어야 하는
우려물질(SoC)은 무엇인가?**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포장의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장 내 우려물질(SoC)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라벨링 방식에 의한 우려물질(SoC) 라벨링 방법론을 규정하는 시행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IX. 환경 강조표시

1) 사업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한 특성에 대해 환경 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가?

제14조는 ‘본 규정에서 법적 요건이 설정된 특성(properties)’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퇴비화 가능성(compostability), 재활용 함량(recycled content), 재사용성(reusability), 중량 및 부피 최소화 등과 관련된 환경 강조표시 및 지속가능성 라벨은 PPWR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해당 강조표시가 제14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즉, PPWR에서 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강조표시가 포장 단위 전체에 관한 것인지 또는 특정 구성 요소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지속가능성 관련 환경 강조표시(예: 알루미늄 포장의 재활용 함량)에 대해서는 기존 EU 환경 강조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 (EU) 2024/825을 준수해야 한다. 동 지침은 불공정 상업관행 지침(2005/29/EC) 및 소비자 권리지침(2011/83/EU)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 상업관행 지침과 기타 EU 법령 간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해석 지침⁽²¹⁾을 참고해야 하며, 특히 제1.2.1절(기타 EU 법령과의 관계) 및 제4.1.1.1절(환경 강조표시 관련 EU 법령 간 상호관계)에서는 법령 간 충돌 시 특별법(*lex speciali*)(예: PPWR)이 일반법(*lex generalis*)(UCPD)보다 우선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다.

2) 제조자가 포장 단위의 재활용 함량 비율에 대한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최소 요건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재활용 함량 10%, 20%, 50%에 대한 강조표시가 가능한가?

제조자가 시장에 공급된 포장의 재활용 함량 비율에 대해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소 목표치(제조시설 및 연도 기준 평균값으로 산정)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재활용 함량이 이러한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강조표시가 허용된다. 재활용 함량의 계산 및 검증 방법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환경 강조표시 역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함량에 대한 자율적 라벨은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다.

3) 제14조는 PPWR에서 규정된 조건(예: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환경 강조표시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지속가능 포장에 대한 모든 환경 강조표시에 적용되는가?

제14조는 ‘본 규정에서 법적 요건이 설정된 특성(properties)’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PPWR에서 규율하지 않는 환경 강조표시(예: 알루미늄의 재활용 함량 등)에 대해서는 기존 EU 환경 강조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 (EU) 2024/825을 따라야 한다.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시 - 내부시장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 상업관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5/29/EC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OJ C 526, 29.12.2021, pp. 1-129).

X. 제조자의 의무

1) 제15조 제1항은 제조자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포장 제조자에게만 적용되는가?

적합한 포장만을 시장에 공급해야 할 의무는 제조자로 정의된 경제주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자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제38조)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 또는 제조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예: 시험기관 또는 인증체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U 적합성 선언서**(제39조)는 제조자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는 제17조에 따라 제조자가 서면 위임을 통해 지정한 공인대리인이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그 일부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포장이 지속가능성 및 라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됨**을 의미한다.

2) 제조자 및 수입자의 의무에 관한 PPWR 제15조 및 제18조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PPWR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여기에는 제조자 및 수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본 규정의 여러 조항, 특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된 실체적 의무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일부 실체적 요건은 서로 다른 적용 시점을 가지며, 이는 종종 집행위원회가 특정 시행조치를 채택하는 시점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재활용성 요건을 충족하고 제38조 및 부속서 VII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재활용 설계 요건에 관한 위임법 채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해당 위임법이 2028년 1월에 채택되어 재활용 설계 요건 및 관련 평가 방법을 완전히 조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구속력 있는 재활용성 성능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해당 위임법 발효 후 2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기타 지속가능성 및 주요 요건의 적용 시점(PPWR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 원료 함량(플라스틱 포장): 2030년 1월 1일 또는 PPWR 제7조 제8항에 따른 시행법 발효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점
- 포장 최소화(제10조 제1항 및 제2항): 2030년 1월 1일
- 운송 포장, 집합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요건: 2030년 1월 1일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시행법 발효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점. 판매 포장의 빈 공간 요건은 제10조를 참조

- 재사용 포장(제11조): 본 규정의 발효일(2025년 2월 11일)부터 적용. 다만 최소 반복 사용 횟수 요건은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행법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적용
- 재사용 목표: 2030년 1월 1일 또는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사용 목표 산정 방법에 관한 시행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중 더 늦은 시점(해당 시행법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채택 예정)

3) 공급자는 플라스틱 쇼핑백과 같은 ‘단순 포장(plain packaging)’에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는가?

포장 또는 포장 재료의 공급자는 제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제조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 제조자가 소기업(microenterprise)이고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다.

본 규정은 포장 공급자가 포장 자체 또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식별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제조자가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

또한 본 규정은 공급자가 포장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무는 제조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생산 단계에서 포장의 식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급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포장 재료를 공급하는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본 규정상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공급자는 본 규정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주체**(제조자, 수입자)는 해당 포장 또는 포장 재료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XI. 빈 공간

1) 제24조에 따른 빈 공간 요건을 준수할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제24조 제1항은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에 대해 최대 빈 공간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포장을 충전하는 경제주체가 준수해야 한다. 이에는 제3조 제1항 제13호에 정의된 제조자뿐만 아니라,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타 경제주체도 포함된다.

2) 제24조 제4항에서의 ‘최소한으로 필요한(minimum necessary)’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판매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판매 포장의 총 내부 용적과 포장된 제품의 용적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해당 조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종이 완충재, 공기 쿠션, 버블 랩, 스펀지 완충재, 폼 완충재, 목모(wood wool), 폴리스티렌 또는 스티로폼 칩과 같은 충전재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된다. 판매 포장의 경우 PPWR에서는 빈 공간 비율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판매 포장을 충전하는 경제주체가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장 최소화에 관한 제10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3)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포장도 50% 빈 공간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가?

포장 최소화에 관한 제10조와 달리, 제24조는 포장 디자인권 또는 상표로 보호되는 포장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50% 기준은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에만 적용된다(제24조 제1항).

4) 원형 제품 및 기타 불규칙한 형상 제품은 빈 공간 산정 방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집행위원회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시행법을 채택할 예정이다(제24조 제2항). 해당 방법론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제품, 둘 이상의 판매 포장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 액체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제품, 소형 제품으로서 대형 제품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운송 포장에서 운송 라벨 부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공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제주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해당 시행법 발효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빈 공간 비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법론은 불규칙한 형상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XII. 금지 및 특정 포장의 사용

1) 부속서 V의 이행에 있어 법적 조화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가 2027년 2월까지 회원국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협의하여 부속서 V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적용 대상 포장 형식의 예시, 제한 사항에 대한 예외, 그리고 부속서 V 제2호에서 제외되는 과일 및 채소의 일부 예시 목록이 포함된다(제25조 제6항).

집행위원회는 이미 해당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 발전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적용 대상 포장 형식 및 예외 사항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고, 회원국 간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규정은 면제 대상 과일 및 채소 목록을 시행법 또는 위임법으로 조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행위원회는 EFSA와 함께 향후 지침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침이 마련될 경우 회원국이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정에는 2032년까지 포장 금지 조치를 평가하고, 필요 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예외 및 면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부속서 V 제2호에서 사용된 ‘비가공 신선 과일 및 채소(*unprocessed fresh fruits and vegetables*)’와 ‘입증된 필요성(*demonstrated need*)’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가공 신선 과일 및 채소’ 및 ‘입증된 필요성’의 의미는 집행위원회 지침 마련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및 EFSA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비가공 신선 과일 및 채소’는 가공 또는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일 및 채소의 중량이 1.5kg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 포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 비가공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범위를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3) 부속서 V 제4호에서 규정된 예시적 포장 형식 및 제품의 적용 범위를 명시된 예외 외의 다른 부문(예: 학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

부속서 V 제4호는 HORECA(숙박,외식, 카페/케이터링 업계) 부문에서 사용되는 조미료, 잼류, 소스, 커피 크림, 설탕 및 향신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a) 즉시 소비를 위한 포장된 테이크아웃 식품, 및 (b) 보건의료 부문만을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예시적 포장 형식은 향후 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PPWR는 예외 적용 대상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부속서 V 제1호에서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necessary to facilitate handling)’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제한은 ‘판매 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집합 포장으로서, 소비자가 둘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편의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즉, 사용 편의성 및 휴대성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집합 포장이 규제 대상이다.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2개 이상의 재고관리단위(SKU)를 묶는 결속 필름(collation film) 및 수축 포장(shrink wrap)이 있다.

기타 사례 및 해석 기준은 향후 지침에서 추가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기업 간 거래(B2B)는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 지침에서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5) 부속서 V 제6호에 따라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봉투도 금지되는가?

모든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봉투 포함)는 부속서 V 제6호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위생 목적상 필요하거나 식품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벌크 식품의 판매 포장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는 부속서 V 제6호에 따른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PPWR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전체에 적용되는 40% 감축 목표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회원국은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유형의 봉투를 감축 목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은 위생 목적 또는 벌크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봉투 포함)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의 유통 제한(금지 조치)은 비례성 및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PPWR 제34조 제2항).

6) 호텔 객실 내 미니어처 화장품은 요청 시 제공(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칫솔이나 화장솜과 같이 위생상의 이유로 포장된 제품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가?

부속서 V 제5호는 “개별 예약을 위해 제공되는 숙박 부문용 일회용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화장품, 위생용품 및 세면용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요청 시/ 제공되거나

호텔 내에서 구매 가능한 미니어처 포장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 예약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위원회는 조화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 2월 12일까지 지침을 마련하여 부속서 V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위임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적용 대상 포장 형식의 예시 및 제한에 대한 예외가 포함될 예정이다(제25조 제6항). 집행위원회 지침이 적시에 채택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적용 시점 약 3년 전에 충분히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지침 마련 이전에 숙박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제품은 포장 없이 제공되는 것은 가능하다.

7)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 및 음료 포장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및 축제에서도 금지되는가?

스포츠 및 공연 시설과 축제는 HORECA 정의(제3조 제1항 제35호)에 포함되며, 이는 NACE 제2판에 따른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NACE 제2판에서는 제공되는 시설의 유형이 아니라, 즉시 소비 가능한 식사 및 음료가 제공되는지가 판단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HORECA 사업장은 부속서 V 제3호에 따라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8) 호텔 룸서비스는 부속서 V 제3호에 따른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가? 또한 호텔이 음식점을 벗어나 외부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속서 V 제3호에 따른 포장 금지 규정은 HORECA 부문에 적용되며, 이는 제3조 제1항 제35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NACE 제2판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호텔은 HORECA 부문에 포함되므로, 룸서비스는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호텔이 자사 시설 외부로 음식 및 음료를 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포장은 제25조 및 부속서 V 제3호에 따른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규정된 테이크아웃 부문에 대한 재충전(refill) 및 재사용(re-use)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9) 부속서 V의 ‘예시(illustrative example)’ 열에 제시된 사례 목록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가?

해당 목록은 ‘예시(illustrative example)’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포장 형식은 앞선 문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7년 2월 12일까지 마련될 집행위원회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XIII. 재사용 및 재충전

재사용 포장 (제11조)

1) 재사용 포장의 회전 횟수(rotations) 또는 사용 횟수(trips)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재사용 포장은 최소 반복 사용 횟수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될 위임법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재사용 운송 포장의 회전 횟수 산정 및 보고 의무는 재사용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은 해당 의무에서 면제된다(부속서 VI 제A부 제1절 (i)). 시스템 운영자가 존재하는 폐쇄형 재사용 시스템의 경우, 개별 재사용 포장별 회전 횟수 또는 사용 횟수를 보고해야 하며, 개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평균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재사용 목표 달성 여부의 산정 방법(제30조)은 제12조 제6항에 따라 채택될 시행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행법에서는 개별 QR 코드 부착 및 회전 횟수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평균 추정값에 기반한 산정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조자는 재사용 포장의 설계 및 관련 재사용 시스템이 최소 반복 사용 횟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시점에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개방형 및 폐쇄형 재사용 시스템 모두에 적용된다.

제27조 및 부속서 VI에 따르면, 재사용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내에서 순환되는 재사용 포장이 위임법에서 정한 최소 반복 사용 횟수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회원국의 시장감시 당국에 의해 검증된다(제62조 제1항 (h)).

재사용 시스템

2)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은 재사용 포장이 단일 시스템 운영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장소, 제품 유형 또는 산업 간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이 반드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후 해당 포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재사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포장, 공동 인프라(예: 수거, 세척 및 재배포 시설)를 활용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PPWR에 따라 물류 관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시스템 운영자가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PPWR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은 재사용 라벨 부착 의무 및 회전 횟수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0.33리터 롱넥 재사용 병 시스템: 주로 양조업체에서 사용되며, 미네랄워터 및 탄산음료 생산업체에서도 활용된다. 독일 양조협회가 병 표준을 제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스템 운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로 팔레트(Euro Pallet): 팔레트에 대한 표준과 생산 라이선스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스템 운영자 또는 통합 관리 체계는 없다. 다만 EPAL과 같은 기관이 라이선스 관리 및 일부 서비스를 담당한다.

3) 재사용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적절한 재사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PPWR 제27조에 따르면, 재사용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이 PPWR 및 부속서 VI 제A부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제주체는 자체적으로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은 부속서 VI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PWR는 부속서 VI에서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분야는 자사 제품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사용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과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재사용 시스템은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재사용 시스템은 규모와 적용 범위가 다양하며, 소규모 지역 단위 시스템부터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걸쳐 운영되는 대규모 시스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재사용 시스템이 반드시 특정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 내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동등한 접근성과 공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운송 포장에 대한 재사용 목표

5) 운송 포장에 대한 재사용 목표에서 종이 상자(cardboard boxes)에 대한 예외는 인터레이어(interlayers) 및 골판지에도 적용되는가?

제29조 제4항 point (d)는 종이 상자를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골판지 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9조 제4항에 규정된 예외 목록은 재질, 형식 및 용도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한정적 목록이다. 따라서 종이 상자에 대한 예외는 종이 상자에만 적용되며, 인터레이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인터레이어는 제29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포장 형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운송 포장 중 유연 포장(flexible formats)에 대한 예외는 어떤 포장 형식을 의미하는가?

제29조 제4항 point (c)는 식품 또는 사료와 직접 접촉하여 운송에 사용되는 유연 포장 형식을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식품 및 사료는 규정 (EC) No 178/2002 제2조 및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의를 따르며, 식품 성분은 규정 (EU) No 1169/2011 제2조 제2항 (f)에

따른 정의를 따른다.

따라서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빅백(big bags) 또는 대형 유연 중간 벌크 용기(FIBC) 등 유연 포장 형식 중에서, 식품 또는 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위험물 운송용 포장(제29조 제4항 point (d)) 또는 대형 기계 운송을 위해 맞춤 설계된 포장(제29조 제4항 point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사용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재사용 목표 달성 산정 방법에 관한 시행법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7) ‘팔레트 래핑 및 결속 스트랩(pallet wrappings and straps)’은 하나의 포장 형식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형식으로 보아야 하는가?

팔레트 래핑과 결속 스트랩은 서로 다른 포장 형식에 해당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재사용 목표 준수 여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운송 단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재사용 목표 달성 산정 방법에 관한 시행법에서 추가로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8)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포장 형식도 운송 포장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밀봉 봉투(sealed bags)와 같은 모든 유연 포장 형식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제1항에 열거된 형식만 해당되는가?

제29조 제1항은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포장 형식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포장의 유연 형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밀봉 봉투가 중간 벌크 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29조 제4항 point (c)에 따라 식품 또는 사료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9) 운송 단위(transport unit)의 정의는 무엇인가?

‘운송 단위’라는 용어는 본 규정에서 정의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제30조 제3항에 따라 채택될 시행법에서 재사용 목표 달성 산정 규칙의 목적상 해당 용어가 정의될 가능성이 있다.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

10)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는 비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에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가, 아니면 통합된 목표인가?

제29조 제6항에 따른 음료 재사용 목표는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모두에 적용된다. 소매업자, 바, 레스토랑과 같은 최종 유통업자는 재사용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음료의 유형(알코올, 비알코올 또는 혼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유통업자는 자사 브랜드 음료가 재사용 목표 달성에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는 어떤 음료가 포함되는가?

제29조 제6항에 따른 음료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 음료 범위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될 집행위원회 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다.

한편, 제29조 제7항은 특정 음료를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정 (EU) No 1169/2011 제24조의 의미에 따른 고도로 부패하기 쉬운 음료⁽²²⁾.
- 규정 (EU) No 1308/2013 부속서 I 제XVI부에 열거된 우유 및 유제품⁽²³⁾ 그리고 이사회 규정 (EEC) No 2658/87 (24) 부속서 I의 결합품목분류표(CN) 코드 2202 99 11 및 2202 99 15에 해당하는 유제품 유사품⁽²⁴⁾. 규정 (EU) No 1308/2013 부속서 VII 제II부 제1호, 제3호부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에 열거된 포도 재배 관련 제품 범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251/2014에서 정의된 가향 와인 제품(aromatised wine products). 결합품목분류표(CN) 코드 2206 00에 해당하는 포도 이외의 과일 및 채소로부터 제조된 와인 제품 및 가향 와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 및 기타 발효 음료. 결합품목분류표(CN) 품목번호 2208에 해당하는 알코올 기반 증류주.

12) 회원국은 음료에 대한 국가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 저감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제51조 제2항 point (c)에 따라 EU 차원의 조화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제29조 제6항에서 정한 재사용 목표를 상향하거나, 다른 음료에 대해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29조 제7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음료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별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폐기물 발생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며, 내부시장 조화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기술규정에 해당하므로 TRIS 절차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기존의 국가별 재사용 의무를 2030년 1월 1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시점 이후에는 PPWR에 따른 재사용 목표가 우선 적용된다. 회원국이 국가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를 고하여야 한다.

(22) 2011년 10월 25일자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1169/2011(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924/2006 및 (EC) No 1925/2006을 개정하고, 집행위원회 지침 87/250/EEC, 이사회 지침 90/496/EEC, 집행위원회 지침 1999/10/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13/EC, 집행위원회 지침 2002/67/EC 및 2008/5/EC, 그리고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608/2004를 폐지)(OJ L 304 22.11.2011, p. 18)

(23) 2013년 12월 17일자 농산물 시장의 공통 조직을 수립하고 이사회 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및 (EC) No 1234/2007을 폐지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1308/2013 (OJ L 347, 20.12.2013, pp. 671-854)

(24) 2018년 2월 7일자 미국 원산 특정 제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196(OJ L 044 16.2.2018, p. 1)

13) 레스토랑 또는 바 운영자는 음료에 대한 10% 재사용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HORECA 부문을 포함한 모든 최종 유통업자는 제29조에 따른 음료 재사용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판매 면적이 100m² 미만인 최종 유통업자는 제2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연간 1,000kg 미만의 포장을 해당 회원국 영토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며 소기업(micro-enterprise)에 해당하는 최종 유통업자도 제29조 제13항 point (a)에 따라 음료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4) 보증금 반환제에 포함된 일회용 음료 포장은 음료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되는가?

제29조 제6항에 따른 음료 재사용 목표 준수 의무는 소매업자 및 레스토랑과 같은 최종 유통업자에게 적용된다.

PPWR는 보증금 반환제에 포함된 일회용 음료 포장에 대해 일반적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예외 및 유연성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 면적이 100 m² 미만인 모든 최종 유통업자는 전면 면제(제29조 제10항)
- 회원국은 인구 2,000명 미만의 소규모 도서 지역에 소재한 최종 유통업자를 면제할 수 있음(제29조 제11항)
- 회원국은 인구 밀도 54명/km² 미만의 지역에 위치한 최종 유통업자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인구 5,000명 초과 지역에 위치한 최종 유통업자에는 재사용 목표가 적용됨(제29조 제11항)
- 회원국은 최종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재사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밀집 지역 또는 원격 지역에서 최대 5개의 최종 유통업자가 재사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음(제29조 제12항)
- 연간 1,000kg 이하의 포장을 회원국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최종 유통업자는 전면 면제(제29조 제13항)
- 회원국은 제29조 제14항 및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제25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면제를 규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모든 예외 및 유연성 규정이 회원국에서 최대한 활용되는 경우, 음료 재사용 목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최종 유통업자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유통업자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15)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는 2030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10%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집행위원회는 2034년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사용 목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특정 포장 형식 또는 경제주체를 재사용 목표에서 면제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가?

본 규정은 제29조에서 규정된 운송 포장, 집합 포장 및 음료에 대한 조화된 재사용 목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위임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법은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만 채택될 수 있으며, 최신 과학적·경제적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위임법 채택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특정한 경제적 제약에 직면한 경제주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위생 및 식품 안전 문제, 또는 환경적 영향 등으로 인해 재사용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해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더 나은 규제 지침 및 툴박스([Better regulation: guidelines and toolbox](#))에 따른 적절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XIV.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1) 퇴비화 가능 폐기물 봉투는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장’의 정의 및 제3조 제1항 제55호에 따른 ‘플라스틱 봉투’의 정의는 판매용 봉투(즉, 운반용 봉투)에만 적용된다.

폐기물 봉투 또는 남은 음식을 싸 가는 도기백(doggy bag)은 제품에 해당하며 포장이 아니므로 PPWR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회원국은 모든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를 금지할 수 있는가?

위생 목적상 필요하거나 식품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벌크 식품의 판매 포장으로 제공되는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는 제25조에 따라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원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의 지속가능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봉투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봉투의 제조,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해당 봉투의 사용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금지 조치(시장 제한)는 비례성 및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국은 EU 차원 또는 국가 차원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의 소비량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PPWR에 따른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의 요건은 무엇인가?

퇴비화 가능 봉투는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에 해당하며, 위생 목적 또는 식품 폐기물 방지를 위한 벌크 식품 포장으로 필요한 경우, 제25조 및 부속서 V 제6호에 따른 일반적인 포장 금지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초경량 또는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는 제25조 및 부속서 V에 따라 금지되지는 않으나, 제34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도입하는 국가적 금지 또는 기타 유통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EU 또는 국가 차원에서 금지되지 않은 초경량 또는 경량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에 대해 제9조 제2항 point (a)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비화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XV. 포장의 적합성 평가

1) 기업은 PPWR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언제부터 수행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본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제71조). 다만 일부 핵심 규정은 해당 조항에서 별도로 정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여러 경우에서 의무의 적용 시점은 필요한 시행법 또는 위임법 채택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서 별도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적용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부속서 VII에서 언급된 포장 ‘유형(type)’은 부속서 II 표 1의 ‘유형(types)’과 동일한 의미인가?

부속서 VII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된 ‘유형(type)’은 부속서 II에서의 포장 유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부속서 VII에서의 ‘유형’은 개별 포장 형식 또는 포장 배치/시리즈를 의미하며, 재활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포장 재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부속서 VIII에서 언급된 ‘포장의 고유 식별(unique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인 제품 추적성으로 충분한가?

본 규정은 ‘포장의 고유 식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부속서 VIII에서의 해당 표현은 포장 자체가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등의 방식으로 식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에 대해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모든 관련 적합성 선언서를 하나의 문서로 구성한 자료집(dossier)을 작성해야 하는가?

포장된 제품이 EU 적합성 선언서를 요구하는 둘 이상의 EU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질 및 물품에 관한 규정 (EU) No 10/2011 제15조에 따른 적합성 선언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규정 (EC) No 1935/2004 제16조에 따른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EU 법령을 포괄하는 단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언서에는 관련 EU 법령과 그 공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단일 적합성 선언서 작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포장된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여러 개의 개별 적합성 선언서를 포함하는 자료집 형태로 제시할 것인지, 또는 단일 문서로 제시할 것인지는 제조자가 결정할 수 있다. 단일 문서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포장된 제품과 포장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각각 별도로 수행되고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5) 적합성 평가는 병, 마개, 라벨과 같은 포장의 각 부분별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포장 단위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는가?

적합성 평가는 전체 포장 단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적합성 선언서 또한 이에 대해 작성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통합된 구성요소와 분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6) 재활용성(제6조) 및 재활용 함량(제7조) 관련 예외에도 적합성 평가 절차가 요구되는가?

재활용성에 관한 제6조 및 재활용 함량에 관한 제7조에서 규정된 예외의 준수 여부는 실제로 평가되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문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7) 제15조 제5항의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또는 기타 요소’라는 문구는 제조자가 이 중 하나만 표시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해당 문구는 해당 포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또는 기타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8) 제조자는 자사의 포장이 도달할 수 있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모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제15조 제8항 및 제19조 제5항에 따라, 제조자와 유통자는 각각 자신이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한 국가에서 비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유사한 의무를 가진다. 제조자의 의무는 해당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관할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한편, 제조자가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유통업자의 창고로 제품을 공급하고, 해당 유통업자가 그 창고를 통해 여러 국가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통보할 의무는 유통업자에게 있다.

9) 규정 또는 관련 조항의 적용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된 포장, 또는 특정 조항의 적용일 이전에 출시된 포장은 이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거나 회수 또는 리콜하지 않고도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예외로서 재사용 포장의 경우 기준일은 2025년 2월 11일이며(제15조 제9항 PPWR), 이는 해당 날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거나 회수 또는 리콜하지 않고도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조화된 EU 표준과 관련하여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PPWD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여러 요구사항(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들은 PPWR의 지속가능성 요건의 선행 개념으로 볼 수 있다. PPWD 하에서는 포장이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조화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합성이 추정되었다⁽²⁵⁾.

그러나 PPWR 하에서는 기존의 조화 표준은 지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서문 58 참조), 이들 표준에 근거한 적합성 추정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제70조 제1항 point (b)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PPWD의 포장 최소화 관련 필수 요구사항에 대해 2029년 말까지 적용된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조화 표준을 적합성 추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PPWR 적용 이전에 기존 조화 표준 목록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²⁶⁾.

한편, PPWR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또는 개정된 조화 표준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해당 표준 목록을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부터 다시 적합성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표준 목록의 게재는 해당 시점부터 적합성 추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11)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나 크기가 다른 포장의 경우, 모든 크기별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선언서로 충분한가?

부속서 VII에 따르면, 제조자는 각 포장 유형별로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는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포장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문서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요건에 대한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문서는 적용 가능한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의 설계, 제조, 사용 및 작동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장 최소화 요건에 대한 평가는 포장된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활용 함량에 대한 평가는 포장의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선언서는 적용 요건 및 포장된 제품을 고려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수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에 대해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병의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담고 있으며 크기 차이가 제5조부터 제12조의 요건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는 해당 병에 대해 하나의 적합성

(25) EN 13427:2004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분야에서 유럽표준 사용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EN 13429:2004 ‘재활용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0:2004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1:2004 ‘에너지 회수(소각 열회수 포함)가 가능한 포장 요건(최소 발열량 기준 포함)’; EN 13428:2004 ‘제조 및 구성 관련 요구사항 - 원천 감축(source reduction)을 통한 포장 폐기물 예방’; EN 13432:2000 ‘퇴비화 및 생분해를 통한 회수가 가능한 포장 요건’.

(26) 조화 표준이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의 경우, 폐지된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 관보(OJEU)에 게재된 조화 표준은 해당 참조가 관보에서 철회되지 않는 한 적합성 추정의 목적상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T-474/15 (Global Garden Products 대 집행위원회)에 근거한다.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조자는 포장의 양산이 본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포장 설계 또는 특성의 변경, 또는 적합성 선언 또는 검증의 근거가 되는 조화 표준이나 기타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12) 운송 포장도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한가?

운송 포장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다. 팔레트, 팔레트 칼라, 포장 필름, 스트랩과 같은 서로 다른 포장 유형은 각각 별도의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각각 별도의 적합성 선언서를 가져야 한다.

13) 제조자가 수행한 재활용성 평가의 적정성은 누가 확인하는가?

재활용성 성능 등급 평가는 제조자가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해당 평가 결과는 포장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감시 당국은 자국의 계획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며, 제68조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정해진 제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경제주체가 PPWR에는 부합하지만 국가 요구사항에는 부합하지 않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제4조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추가적인 국가 요구사항

2) PPWR의 특정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추가적인 국가 요구사항

첫 번째 경우(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벌금이 경제주체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며, 시장 장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회원국이 규정을 초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벌금 부과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벌금 역시 조약의 일반 원칙, 특히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TRIS 통보 시점에 제출되어야 한다.

XVI. 폐기물 예방

1)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책임이다. 회원국은 제43조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 감축 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은 재사용 목표 설정, 테이크아웃 부문에 대한 리필 및 재사용 의무, 포장 금지, 포장 최소화 요건(빈 공간 기준 포함) 등 여러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조치를 조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화된 조치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고,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폐기물 발생 억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회원국의 역할이다.

EU 차원의 조화된 조치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국가 조치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제43조 제5항). 또한 이러한 조치에는 경제주체에 대한 추가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더 높은 수준 또는 추가적인 재사용 목표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제29조 제15항 및 제16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제43조 제5항에 따라, 국가 이행 조치는 비례성 및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역 장벽이나 경쟁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재활용성 등 다른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더 가벼운 포장 재질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이 폐기물 예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각 회원국은 2018년 기준 1인당 발생한 포장 폐기물량(결정 2005/270/EC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된 수치)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최소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를 감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보고한 포장 폐기물 발생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러한 목표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폐기물 감축 목표는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가정용 포장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PPWR는 모든 포장 및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이는 산업, 기타 제조업, 소매 또는 유통, 사무실, 서비스 부문 또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포장 폐기물 발생량 산정과 관련된 규정(제53조 제2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포장 폐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 통계는 해당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포장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43조의 이행 방식과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선택은 회원국의 재량에 속한다. 회원국은 목표 달성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폐기물을 국가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에서 제외하고, 가정용 포장 폐기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가정용 포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산업 및 상업용 포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유지할 수 있다(제43조 제3항).

4) 회원국은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하려는 국가 규정을 TRIS를 통해 통보해야 하는가?

지침 (EU) 2015/1535⁽²⁷⁾은 회원국이 제품(및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모든 기술규정 초안을 국가 법령으로 채택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규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이 제정하는 기술 사양, 기타 요구사항 또는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며, 제품의 마케팅 또는 사용,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준수가 의무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행정적 조치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술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신규 이행 조치 초안은 기술규정정보시스템(TRIS)에 통보되어야 한다⁽²⁸⁾. 다만 본 규정에 부합하는 기존 국가 조치에 대해서는 TRIS 통보 절차에 따라 재통보할 필요는 없다.

회원국의 통보는 초안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수정이 여전히 가능한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지침 (EU) 2015/1535 제1조 제1항 (g)). 통보되지 않은 국가 기술규정은 국가 법원에 의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²⁹⁾.

5) 회원국이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한 국가 조치가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가벼운 포장 재질로의 전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회원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회원국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폐기물 발생 억제 프로그램과 TRIS 통보 절차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

⁽²⁷⁾ 2015년 9월 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1535 - 기술규정 및 정보사회 서비스 규정 분야에서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지침(OJ L 241, 17/09/2015, p. 1-15).

⁽²⁸⁾ TRI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²⁹⁾ ‘CIA-Security’ (사건번호 C-194/94).

XVII. 확대 생산자 책임제

1)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에서 면제되는가?

PPWR 및 지침 2008/98/EC(폐기물 기본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에서는 초소형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EPR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든 생산자는 해당 회원국 영토 내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장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는 제44조에 따른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보고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 생산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PPWR은 연간 10톤 미만의 포장을 회원국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제한된 보고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회원국 및 생산자책임기구(PRO)는 생산자의 출신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초소형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은 PPWR 적용 이후에도 WFD에 따라 초소형기업에 대해 낮은 수준의 행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WFD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EPR의 경우, 생산자는 필요한 비용의 최소 80%를 부담
- 2018년 7월 4일 이후 회원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EPR의 경우, 제품 생산자는 필요한 비용의 최소 80%를 부담
- 2018년 7월 4일 이전 회원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위한 EPR 제도: 생산자는 필요한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
- 2018년 7월 4일 이전 회원국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EPR의 경우, 제품 생산자는 필요한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
- 또한 잔여 비용은 폐기물 최초 발생자 또는 유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 특례 규정은 2018년 7월 4일 이전에 도입된 EPR에서 제품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

PPWR는 ‘생산자’를 포장의 유형 및 판매 방식(운송 포장, 판매 포장, 집합 포장, 1차 포장 또는 서비스 포장 등)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자가 초소형기업에 해당하고 동시에 해당 포장의 생산자인 경우, 포장 재료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에 소재하는 때에는 해당 제조자는 EPR 의무에서 면제된다.

2) PPWR는 국가별 EPR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조화하는가?

PPWR는 복수의 회원국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적 EPR 의무를 조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생산자 등록, 보고 기한 및 보고 주기, 그리고 보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세분화 수준과 관련된다.

또한 PPWR는 회원국 내에서 누가 ‘생산자’에 해당하는지를 조화하고 있다.

이는 포장의 유형 및 판매 방식에 따라 기업의 EPR 의무 부담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생산자 정의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본 문서 제II항을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PPWR는 EPR 비용의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기준도 조화하고 있다. 에코모듈레이션은 제6조에 규정된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회원국은 자국 EPR 제도에서 에코모듈레이션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재사용성, 재활용 함량 등 추가적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 회원국은 자국의 여건 및 법적 체계에 따라 EPR 제도 및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계속 보유한다.

3)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에 최초로 보고하여야 하는 달력연도는 언제인가?

모든 회원국은 생산자가 등록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자 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까지 EPR 등록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하는 이행법을 채택하여야 한다(제44조 제14항 PPWR). 회원국은 해당 이행법 채택 이후 18개월 이내에 생산자 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PPWR).

생산자는 매년 6월까지 직전의 완전한 1개 달력연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생산자는 조화된 신규 규정에 따라 최초로 2029년 6월 1일까지 국가별 EPR 등록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어느 범위까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생산자의 서면 위임에 근거하여, 온라인 플랫폼은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시장에 공급되는 각 회원국에서 EPR 비용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제45조 제4항 PPWR). 다만 EPR 등록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은 오직 생산자, 생산자책임기구(PRO) 또는 공인대리인에게 있다. 생산자가 해당 플랫폼을 공인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의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다.

5)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모든 생산자를 확인해야 하는가?

EPR 의무와 관련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방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³⁰⁾에 따른 의무와

(30) 2022년 10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2/2065 - 디지털 서비스 단일시장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일치하도록, PPWR는 소비자가 생산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생산자로부터 해당 생산자가 소비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정보와 포장에 관한 EPR 의무가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기인증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정보를 생산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45조 제6항 PPWR). 이는 생산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제45조 제8항 PPWR).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은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생산자 등록부의 데이터와 대조·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31/EC 개정(OJ L 277, 27.10.2022, pp. 1-102)

XVIII . 반환 및 수거 시스템

1) 재활용 재료에 대한 우선 접근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수거 시스템 및 재활용 시설은 재활용 재료의 고유한 품질이 유지되거나 회수되어, 수량·품질 또는 기능의 최소한의 손실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다시 재활용 및 사용될 수 있는 적용 분야에 대하여 재활용 재료에 대한 우선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제48조 제2항 PPWR).

이 조항의 목적은 경제주체가 PPWR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함량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플라스틱 포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재료에 대한 우선 접근은 시장가격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우선 접근이 부여되는 재활용 원료의 물량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경제주체가 해당 회원국 영토 내에 시장에 공급한 포장의 물량에 상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선 접근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고 이행 상황이 모니터링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TRIS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2) 포장이 분리수거(separately collected)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리수거는 폐기물 기본지침(WFD)에서 *‘특정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 흐름을 유형 및 성질에 따라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회원국은 폐기물 계층 구조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사용 준비 및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은 제52조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포장 재료의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무적인 수거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분리수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제50조에 따른 일회용 음료용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포장의 분리수거는 보증금 반환제를 통한 수거를 의미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 요건의 준수를 위한 계산 및 보고 요건과, ‘실현 단계(at scale)’ 방법론 수립을 위한 계산 및 보고 요건은 제56조 제7항에 따라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될 이행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3) 재활용 목표 산정 시 복합소재 포장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제53조 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복합 포장의 재활용 목표를 포장 단위에 포함된 모든 재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재질이 포장 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재질은 포장 단위 총 중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5% 기준은 포장 단위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4) ‘철 금속(*ferrous metal*),’ ‘철 금속(주석도금강판 포함)(*ferrous metal including tinplate*)’ 및 ‘강철(*steel*)’은 모두 ‘주석도금강판을 포함한 철 금속’을 의미하는 동의어인가?

‘철 금속(주석도금강판 포함)’이라는 용어는 PPWR에서 회원국의 재사용 포장 보고와 관련된 맥락에서만 사용된다. 또한, 재활용 설계(DfR) 기준이 설정될 재질 및 형식과 관련된 부속서 II 표 1에서도 사용된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속서 XII 표 3에서 사용된 ‘강철(*steel*)’과 제52조 제1항 (b) 및 (d), 그리고 부속서 XII 표 1에서 사용된 ‘철 금속(*ferrous metals*)’이라는 용어에는 주석도금강판이 포함된다.

XIX. 보증금 반환제

1) 보증금 반환제(DRS) 구축 의무 면제는 두 가지 음료용 포장 유형에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 음료용 용기에 대한 90% 분리수거 목표는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두 개의 별도 수거 목표이다. 따라서 DRS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는 각 포장 형식별로 별도로 부여되어야 한다.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2026년까지 PPWR 적용 대상인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또는 금속 음료용 용기의 80%를 초과하여 수거하는 회원국은 DRS 구축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면제를 요청하면서, DRS를 구축하지 않고도 2029년까지 90% 분리수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DRS에 대해 추가적인 국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제50조 제9항 PPWR에 따라, 회원국은 EU 기능조약을 준수하고 PPWR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50조 및 부속서 X에서 규정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DRS 관련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국은 일회용 유리 음료병 및 음료용 카톤에 대한 DR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되며, 와인, 증류주 또는 유제품 기반 음료와 같이 제50조 제4항에 따라 DRS 대상에 포함될 의무가 없는 음료뿐만 아니라 기타 제품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음료 포장, 보증금 제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2009/C 107/01)에 관한 집행위원회 통신문의 권고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재사용 가능한 유리 음료병과 같은 재사용 포장에 대한 DRS를 장려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최종 사용자가 포장을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거된 포장 폐기물의 순도를 높이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최소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제50조 제9항 PPWR).

3) 부속서 X에서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한(high transboundary business)’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속서 X는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보유한 회원국이 지정된 수거 지점에서 다른 회원국의 DRS에 해당하는 포장의 수거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최종 사용자가 해당 포장을 구매할 때 부과된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부속서 X의 최소 요건 준수 여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최소 요건은 2025년 2월 11일 이후에 구축되는 DRS에 적용되며, 기존 DRS의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까지 90% 분리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2035년 1월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하면 된다(제50조 제11항 PPWR). 점점 더 많은 회원국이 DRS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음료용 포장의 분리수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DRS의 국경 간 협력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2038년까지 회원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조치의 모범 사례를 평가하고, 회원국 간 DRS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제50조 제11항 PPWR).

4) 모든 DRS는 비영리 방식이어야 하는가?

2025년 2월 11일 이후에 구축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용기에 대한 DRS는 부속서 X (f)에 규정된 최소 기준에 따라 비영리 방식이어야 한다.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구축된 DRS의 경우, 최초 평가 시 또는 늦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회원국이 90% 분리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2035년 1월 1일부터 비영리 방식이 요구된다(제50조 제11항 PPWR).

5) 우유, 와인 및 증류주 포장도 90% 분리수거 목표에서 면제되는가?

제50조 제4항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와인 또는 와인 유사 제품, 그리고 증류주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용기는 DRS 대상 포함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제품은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 목표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제품의 포장을 자국 DRS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